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64호 2016. 11. 9.(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6-110호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3  
 거창군 고시 제2016-111호 거창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5  
 거창군 고시 제2016-112호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고시 ..... 12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6-1051호 거창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6  
 거창군 공고 제2016-1052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 ..... 23  
 거창군 공고 제2016-1054호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8  
 거창군 공고 제2016-1056호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 57

거창군 공고 제2016-1061호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69

거창군 공고 제2016-1064호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폐지 입법예고 ..... 71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윤재(에버그린전원마을 대표)가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03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에버그린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수월리 산97-97]

2. 사업주체

가. 상호 : 에버그린전원마을

나. 대표자 : 정윤재

다. 영업소재지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45-37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97-97외 3필지

나. 사업면적 : 당초16,381㎡, 변경22,260㎡

다. 규모 : 주택용지 12필지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당초 16,381    변경 22,260	100	
주거용지	당초 11,921    변경 16,681	72.77	
단지내도로	당초 2,899    변경 3,692	17.70	
공공시설용지 (공용상수도, 녹지공간, 저류지)	당초 1,561    변경 1,887	9.53	

4. 사업시행기간 : 2015년 6월 12일 ~ 2017년 10월 31일(변경없음)

5. 붙임 : 도로의 (변경)지정공고

# 도로의 (변경)지정 공고

아래 사항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도로로 (변경)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 사업위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97-97외 3필지
2. 사업면적 : 22,260㎡
3. 도로(변경)지정면적
  - 가조면 수월리 산97-97외 1필지
    - 당초 2,899㎡, - 변경 3,692㎡
4. 토지소유자 : 정윤재
5. 승인번호 : 2015-도시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16. 11. 03.

## 거창군수

※ 관계서류(도서는)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940-3603)에 비치합니다.

거창군 고시 제2016-111호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8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78-103호(1978.03.20)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8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6. 11. 04.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교통 시설 (도로)	중양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81호선) 개설공사	거창	중양	소로	2	81	98.5	8.0	851	거창읍 중양리 406-4	거창읍 중양리 3	경고 1978-103호 (1978.03.2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양로 103

###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7. 12. 31

####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505	851					
1	거창읍 중앙리	406-4	답	777	23		거창군			
2	"	406-1	답	821	176	거창읍 거열로 1길 81, 102호	이지민			
3	"	2-4	답	618	116	거창읍 거열로 1길 81, 102호	이지민			
4	"	2-3	답	951	120	거창읍 소만1길 17, 502호	주식회사 지엔지건설			
5	"	1-15	답	530	341	거창읍 소만1길 17, 502호	주식회사 지엔지건설			
6	"	1	대	2317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328	흥덕산업(주)			
7	"	3-12	답	2	2	거창읍 중앙리 188	김환철			
8	"	1-7	답	37	37	거창읍 소만1길 17, 502호	주식회사 지엔지건설			
9	"	1-2	도	1170	27		거창군			
10	"	3	대	282	1	거창읍 중앙리 188	김환철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8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검토보고서

## □ 실시계획인가 신청현황

○ 신청인	성 명	거창군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11-83-00012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번지)						
○ 신청내용								
사 업 명 칭	중앙리 도시계획도로(소로2-81호선) 개설공사							
사 업 목 적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이용성 확보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							
사 업 위 치	거창읍 중앙리 406-4번지 일원	사 업 규 모			L=98.5m, B=8.0m			
시 행 방 법	공 영 개 발			시 행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2017. 12. 31.		
토지이용현황 (㎡)금회	지목별	도로	대	전	답	임야	구거	계
	면 적	27	9		815			851
토지이용계획 (㎡)금회	용도별	도로						
	면 적	851						
기반시설계획 금회	시설별	도로						
	개 요	L=98.5m, B=8.0m						

## □ 군계획시설(도로) 검토 결과

사 업 명	군계획 결정내용			결 정 사 항		금회 사업규모	군계획 시설결정 일치여부	비고
	시설별	상세 계획	규모	고시번호	최 초 결정일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81호선) 개설공사	교통 시설 (도로)	도로	L=98.5m B=8.0m	경상남도 고시 제1978-103호	1978.03.20	L=98.5m B=8.0m	-	-

## □ 검토결과 의견

- 실시계획인가 구비서류 및 관련 법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국토계획법 제88조 내지 92조 규정을 이행하였으므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6년 11월 03일

검 토 자 : 지방시설서기보 이 창 수 (인)

결 재	담 당	담당주사	과 장

□ 소로 2-81호선 토지편입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505	851					
1	거창읍 중앙리	406-4	답	777	23		거 창 군	-	-	
2	"	406-1	답	821	176	거창읍 거열로 1길 81, 102호	이 지 민			
3	"	2-4	답	618	116	거창읍 거열로 1길 81, 102호	이 지 민			
4	"	2-3	답	951	120	거창읍 소만1길 17, 502호	주식회사 지엔지건설			
5	"	1-15	답	530	341	거창읍 소만1길 17, 502호	주식회사 지엔지건설			
6	"	1	대	2317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328	흥덕산업(주)			
7	"	3-12	답	2	2	거창읍 중앙리 188	김 환 철			
8	"	1-7	답	37	37	거창읍 소만1길 17, 502호	주식회사 지엔지건설			
9	"	1-2	도	1170	27		거 창 군			
10	"	3	대	282	1	거창읍 중앙리 188	김 환 철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p>1. 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li> <li>○ 사업계획서(자금조달계획 및 시행기간 포함)</li> <li>○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li> <li>○ 편입토지조서 및 용지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li> <li>○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li> <li>○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li> <li>○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li> <li>○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li> <li>○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li> <li>○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li> <li>· 적합</li> <li>· 적합</li> <li>· 적합</li> <li>· 적합</li> <li>· 제출</li> <li>· 해당없음</li> <li>· 해당없음</li> <li>· 관련부서 협의서류 첨부</li> <li>· 해당없음</li> </ul>
<p>2. 관련법규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계획법 제8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li> <li>○ 국토계획법 제90조(공고, 열람)</li> <li>○ 국토계획법 제92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사 등에 관한 법률(분묘)</li> <li>·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li> <li>·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li> <li>· 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허가), 제35조(농지전용신고) 등</li> <li>· 도로법 제36조(도로공사시행 허가), 제61조(도로점용)</li> <li>·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등</li> <li>· 하천법 제30조(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제33조(하천점용허가)</li> </ul> </li> <li>○ 사전재해영향성검토(A=5,000㎡ 또는 L=2km이상)</li> <li>○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li> <li>○ 문화재주변 사전영향평가(500m이내)</li> <li>○ 군수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가능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li>· 열람공고("16.10.14~10.27)</li> <li>· 해당없음</li> <li>· 해당없음</li> <li>· 해당없음</li> <li>· 해당없음</li> <li>· 해당없음</li> <li>· 해당없음</li> <li>· 해당없음</li> <li>· 해당없음</li> <li>· 해당없음</li> <li>·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군수위임사무임</li> </ul>

# 실시계획 인가조건

□ 사업명 : 중앙리 도시계획도로(소로2-81호선) 개설공사

## 【복지정책과】

- 장사시설 설치예정여부 : 등록된 장사시설 및 예정지 없음
- 분묘개장허가 : 기존분묘가 있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

## 【경제교통과】

- 광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교통관련법규  
- 관련법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 【기업지원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관련법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 【재무과】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군계획시설(소로2-81호선)사업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해당 군유지의 경우 총괄재산관리관 재무과장은 거창군계획시설을 개설함은 목적대로 이용되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 거창읍 중앙리 1-2번지의 경우 재산관리관인 건설과장과 별도협의바람

## 【민원봉사실】

- 도로명주소법  
-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를 위해 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물현황 통보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한 안내시설물(도로명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시설물 관리담당에 연락 후 사업진행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의 정확성 확보 및 변경된 도로구간데이터 적용을 위해 사업완료 후 준공자료 제공협조

## 【안전총괄과】

### ○ 자연재해대책법(사전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시설)이 2km미만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아님

## 【문화관광과】

### ○ 문화재보호법

- 관련법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한 지적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거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상 “저촉사항 없음”

## 【산림녹지과】

### ○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련법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 【환경과】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법규

-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지역 아님
- 사업시행 시 비산먼지 규제 규정 준수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신고하여야함
- 수질오염총량 검토대상 아님

## 【건설과】

### ○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도로법, 사도법,

공유수면매립,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국유재산 협의법 등

- 관련법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 【도시건축과】

### ○ 농지법

- 「농지법」 저촉사항 없음

## 【농업기술센터】

- 초지법
  - 초지 조성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수도사업소】

- 상수도 관련
  - 사업구간 내에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도로개설 후 건축이 활성화 될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수도관 매설계획 반영바람
  - 실시설계시 협의바람
  - 기존 상수도관과 연결시 상수도담당 입회하에 실시바람
- 하수도 관련
  - 오수 및 우수관로는 새로 신설되는 관로와의 경사로 인한 연결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설치 필요
  - 우수관내 침전방지를 위해 곡관사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하수관로에 연결시에는 하수도담당 입회하에 실시
  - 하수관로지역내 아스콘 포장시에는 하수뚜껑과 포장노면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실시하고, 하수맨홀 및 하수관으로 아스콘등 포장재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할 것
  - 하수관로 매설 후 CCTV 및 수압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 공통사항
  - 기타 관로 파손 및 이설·교체 사항 발생 시 사업자 부담 실시
  -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KWWA)에 맞는 자재사용
  -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및 GIS구축을 위해 준공도면(CAD파일포함)을 필히 수도사업소에 제출

##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제22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7일

### 거창군수

####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490,231,793	477,065,327	13,166,466	2.76%
일	반회계	432,290,134	420,918,089	11,372,045	2.70%
특	별회계	57,941,659	56,147,238	1,794,421	3.20%
	공기업특별회계	29,098,300	28,693,300	405,000	1.41%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0,247,549	10,247,549	0	0.00%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8,850,751	18,445,751	405,000	2.20%
	기타특별회계	28,843,359	27,453,938	1,389,421	5.06%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77,920	777,135	785	0.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07,000	507,000	0	0.0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60,922	860,922	0	0.00%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419,742	1,479,718	940,024	63.53%
	수질개선 특별회계	4,988,531	4,541,995	446,536	9.83%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05,946	703,870	2,076	0.29%
	기반시설특별회계	55,770	55,770	0	0.0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18,527,528	18,527,528	0	0.00%

## 2.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90,231,793	477,065,327	13,166,466	2.76%
지방세수입	19,898,290	19,898,290	0	0.00%
세외수입	17,297,170	17,295,094	2,076	0.01%
경상적세외수입	10,019,092	10,019,09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7,278,078	7,276,002	2,076	0.03%
지방교부세	187,055,000	176,584,000	10,471,000	5.93%
조정교부금등	15,247,000	15,247,000	0	0.00%
보조금	141,638,786	140,331,956	1,306,830	0.93%
국고보조금등	113,020,694	112,421,802	598,892	0.53%
시도비보조금등	28,618,092	27,910,154	707,938	2.5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9,095,547	107,708,987	1,386,560	1.29%
보전수입등	87,751,855	86,811,831	940,024	1.08%
내부거래	21,343,692	20,897,156	446,536	2.14%

### 3.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90,231,793	477,065,327	13,166,466	2.76%
일 반 공 공 행 정	33,776,064	30,607,774	3,168,290	10.35 %
공 공 질 서 및 안 전	6,423,265	6,325,755	97,510	1.54 %
교 육	7,090,764	7,090,764	0	0.00 %
문 화 및 관 광	11,404,027	11,365,277	38,750	0.34 %
환 경 보 호	67,784,309	66,881,173	903,136	1.35 %
사 회 복 지	90,839,655	91,239,672	△400,017	△0.44 %
보 건	7,268,814	7,307,254	△38,440	△0.53 %
농 립 해 양 수 산	102,529,303	100,397,805	2,131,498	2.12 %
산 업 · 중 소 기 업	7,069,423	7,618,759	△549,336	△7.21 %
수 송 및 교 통	21,182,414	20,927,737	254,677	1.22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2,365,427	36,681,887	5,683,540	15.49 %
예 비 비	32,580,914	30,719,056	1,861,858	6.06 %
기 타	59,917,414	59,902,414	15,000	0.03 %

거창군 공고 제2016-1051호

##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02일

###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면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기관명읍면 명칭 개정(안 별표)
  - 거창읍사무소 →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 위천면사무소 →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 가조면사무소 →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 5. 입법예고기간 : 2016. 11. 2. ~ 2016. 11. 22.(20일간)



##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misogir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행정과장

<b>1. 개정이유</b>  ○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면 명칭변경
<b>2. 주요내용</b>  <b>가. 읍면 명칭 개정(안 별표)</b>  ○ 기관명 - 거창읍사무소 →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 위천면사무소 →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 가조면사무소 →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b>3. 참고사항</b>  <b>가. 관계법령</b> ○ 「지방자치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b>나. 예산조치</b> : 해당없음  <b>다. 기타사항</b>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거 창 군 청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a href="#"><u>거창읍 행정복지센터</u></a>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90	복지허브추진 지침 변경
주상면 사무소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655	
응양면 사무소	거창군 응양면 응양로 1431	
고제면 사무소	거창군 고제면 입석1길 14	
북상면 사무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10	
<a href="#"><u>위천면 행정복지센터</u></a>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324	복지허브추진 지침 변경
마리면 사무소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8	
남상면 사무소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36	
남하면 사무소	거창군 남하면 영서로 41	
신원면 사무소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67	
<a href="#"><u>가조면 행정복지센터</u></a>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복지허브추진 지침 변경
가북면 사무소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7-16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2016.1.22.>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군 또는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3. 특별자치시 및 시·군·자치구: 읍·면 또는 동

[전문개정 2011.10.14.]

###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행정과)

( 제정) 1988.05.14 조례 제 723호  
(일부개정) 1988.05.14 조례 제 968호  
(일부개정) 1988.08.01 조례 제 993호  
(일부개정) 1991.08.12 조례 제12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2.01.01 조례 제2061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 조 (사무소재지)

군·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개정 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대부 등이 가능한 공유재산 대상 삭제 (안 제23조)
- (2)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규정 추가 (안 제30조)
- (3)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삭제 (안 제28조 제4항, 제35조 제3항, 제81조 제1항, 81조의2)

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사항 반영

-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 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 사항 추가(안 제34조제12호)

다. 상위 법령 등 규정 사항 개정 (안 제12조, 제24조, 제25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2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재무과 ☎ 055-940-3262, FAX 055-940-3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거창군청 재무과(☎ 055-940-3262, FAX 055-940-32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제2항 조문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의 조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를 “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의 조문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채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6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 채광물 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같은조 제1항의 “채광물 채취”를 “토석채취”로 “채광물 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원석”을 “토석”으로 하고 제2항을 전체를 “제1항의 토석 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의 “채광물”을 “토석”으로 “채광물 채취료”를 “토석채취료”로 한다.

제28조의 제2항의 조문 중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와 제4항을 삭제하고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제6항을 신설한다.

제30조 제1항의 조문 “영 제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2항에”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④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감액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제5항 조문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을 삭제하고 영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율을 정하는 제6항과 감면신청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제7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제7호의 조문 중 “인접”을 “연접”으로 하고 제12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2.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5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을 삭제한다.

제71조의 조문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81조 제1항의 조문 중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81조의2를 삭제한다.

제83조 제2항의 조문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재무과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재무과장 이 선 우
	팀 장 직위·성명	재산관리담당 이 수 용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민 호 (☎940-3262)



<p>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p> <p>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p> <p>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2014.10.01)</p> <p>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p> <p>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p>		<p>공유재산 대부규정이 대폭정비되어 관련 내용 삭제)</p>
<p>제24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채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p> <p>②~④ (생략)</p>	<p>제24조(대부료율) ① ----- ----- ----- -----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 -----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산지관리법 및 소상공인 법 용어 및 정의 정비)</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3~6(생략)</p> <p>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p>	<p>⑤-----</p> <p>-----</p> <p>-----</p> <p>-----</p> <p>-----</p> <p>-----</p> <p>-----</p> <p>-----</p> <p>2. &lt;삭제&gt; -----</p> <p>-----</p> <p>-----</p> <p>-----</p> <p>-----</p> <p>3.~6(현행과 같음)</p> <p>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p> <p>-----</p> <p>-----</p> <p>-----</p> <p>-----</p> <p>-----</p> <p>-----</p>	
<p>제25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u>채광물 채취</u>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u>채광물 채취료</u>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공미터당 그 연도의 <u>원석시가</u>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서 “<u>원석시가</u>”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공미터당 반출되는 <u>거래시가</u>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u>원석시가</u>를 결정하는 때에는 <u>예정가격 결정자료</u>로서</p>	<p>제25조(토석채취료 등) ① -----</p> <p>----- <u>토석채취</u>-----</p> <p>-----</p> <p>----- <u>토석채취료</u>-----</p> <p>-----</p> <p>----- <u>토석</u>-----</p> <p>-----</p> <p>② 제1항의 토석시가란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제2조제9호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 중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u>을 말한다.</p> <p>③ &lt;삭제&gt;</p>	<p>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용어 정비 및 시가적용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정비)</p>

<p>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④ &lt;삭제&gt;</p> <p>⑤----- 토석----- ----- ----- -----토석-----토석 채취료-----</p>	
<p>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p> <p>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p> <p>1~2(생략)</p> <p>③ (생략)</p> <p>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p> <p>&lt;신설&gt;</p>	<p>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 ----- ----- ----- ----- ----- ② ----- ----- ----- -----&lt;삭제&gt;</p> <p>1~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⑤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분납이자율 규정 삭제 및 정비)</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 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 (생략)</p> <p>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p> <p>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p> <p>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p> <p>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의한 감액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100분의 20</p> <p>2.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 100</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2항에 ----- ----- ----- ----- -----</p> <p>1~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p> <p>④ -----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감액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p> <p>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p>	<p>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령 정비 및 그 밖의 공유재 대부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p>
---	---	---

<p><u>분의 25</u></p> <p>3. <u>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 100</u></p> <p><u>분의 30</u></p> <p>⑤ 「<u>관광진흥법</u>」 제76조제3항 및 「<u>관광진흥법 시행령</u>」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u>관광사업자가 공유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u>하는 경우에 <u>사용료 및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u></p> <p><u>&lt;신설&gt;</u></p>	<p>⑤----- ----- ----- -----&lt;삭제&gt;----- ----- -----</p> <p>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u>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u>나목의 시설</u></p> <p>가. <u>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u></p> <p>나. <u>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u></p> <p>다. <u>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u></p> <p>라. <u>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u></p> <p>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목의 <u>시설</u></p> <p>가. <u>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u></p> <p>나. <u>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u></p> <p>다. <u>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u></p>	
--	--	--

<p>&lt;신설&gt;</p>	<p>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6(생략)  7.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8~11(생략)  &lt;신설&gt;</p>	<p>제34조-----  -----  -----  -----  1~6(현행과 같음)  7. -----  -----연접-----  -----  -----연접-----  -----  -----  8~11(현행과 같음)  12.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사도법에  따른  수의매각사항  신설)</p>
<p>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p>	<p>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  -----  -----</p>	<p>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분납이자율</p>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03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 「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제정 2015. 8. 11. 시행 2016. 8. 12.) 제정으로 인하여,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사항 변경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제2조)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3년→2년)(안 제3조제4항)
-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 추가(안 제4조)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 기거 및 중지 내용의 근거법령 변경(안 제4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한 개정

- 분쟁조정 신청 시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 및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조건 삭제(안 제8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불임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16. 11. 03. ~ 2016. 11. 23(20일)

6. 의견제출

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하는 곳 및 방법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50132),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055-940-3603, FAX:055-940-3579, 이메일:7381chohb@korea.kr)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2조”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제80조”로,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제3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를 “공동주택의”로,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를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를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도시건축과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도시건축과장 안 장 근
	담당주사 직위·성명	건축사업담당 전 병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현 보 (☎940-3603)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명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제명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제명의 띄어쓰기 적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u>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공동주택관리법</u> 」(이하“법”이라한다) 제71조 및 제80조의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u>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해당 법령 조항에 맞도록 변경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으로서 「 <u>주택법</u>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 <u>주택법</u> 」 제49조 ----- -----.	「주택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 조항에 맞도록 변경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u>구성한다.</u> ② 위원회 위원은 ----- 1. ~ 2. (생략) 3. 시민단체(「 <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u> 」 ----- 4. ~ 5. (생략) ③ (생략) ④ ----- 임기는 <u>3년</u> 으로-----.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u>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② 위원회 위원은 ----- 1. ~ 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 <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u> 」 ----- 4.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임기는 <u>2년</u> 으로-----.	띄어쓰기 적용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의무 규정 반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개정으로 임기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u>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u>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u>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u></p> <p><u>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u></p> <p><u>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u></p> <p><u>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u></p> <p><u>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u></p> <p><u>6. 그 밖에 -----</u></p>	<p>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u>공동주택</u>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p><u>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u></p> <p><u>2. 그 밖에 -----</u></p>	<p>「주택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p> <p>「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심의 조정 사항 변경</p>
<p>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당사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u></p>	<p>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분쟁당사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삭제)</u>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어 분쟁조정 신청 조건 삭제</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u>이내의 대표자를 선정</u>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p> <p>1.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p> <p>2. ~ 6. (생략)</p> <p>② (생략)</p>	<p>제11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 ----- -----.</p> <p>1. <u>법 시행령 제14조제2항</u> 의----- -----</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해당 법령 조항에 맞도록 변경</p>



[별지 제2호서식]

<b>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b>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p>「<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u>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u> 위원장    인</p> <p>(분쟁 각 당사자 귀하)</p>				





<b>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b>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출 석 대상자	성 명		자 격	
	주 소			
출 석 요 청 일 자	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출 석 장 소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u>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u> 위원장 인</p> <p>(출석대상자 귀하)</p>				
<p>※ 주의사항</p> <p>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청서, 신분증, 도장 및 이 분쟁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 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이유			
<p>「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u>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u> 위원장    인</p> <p>(분쟁 각 당사자 귀하)</p>			

[별지 제6호서식]

<b>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종결 통보서</b>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신청내용				
분쟁조정 종결이유				
<p>「<u>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건의 분쟁조정을 종결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u>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u> 위원장    인</p> <p>(분쟁 각 당사자 귀하)</p>				

[별지 제7호서식]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서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조정대상	단 지 명				
	위 치				
	신 청 인				
	피신청인				
신청내용					
조정결과					
<p>「거창군 <u>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함.</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b>거창군 <u>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u></b></p>					
직 위	성 명	서명또는날인	직 위	성 명	서명또는날인
위원장			위원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72조(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 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 폐지이유

-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 현재 주택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입법예고기간 : 2016. 12. 03. ~ 2016. 12. 23.

5.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602, Fax055-940-357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055-940-360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1부. 끝.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도시건축과장

## 1. 폐지이유

- 가.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 나. 현재는 주택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주택사업업무가 전무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84조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 그 외 특정부서 의견 없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6. 11.
  - (나) 예고결과 : 2016. 12.
- (3) 본문 : 붙임과 같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안 장 근

## 관 련 법 규

### □ 「주택법」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정) 1980.01.30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1980.07.21 조례 제 498호  
(일부개정) 1981.02.28 조례 제 526호  
(일부개정) 1981.07.10 조례 제 542호  
(일부개정) 1982.06.29 조례 제 594호  
(일부개정) 1983.07.12 조례 제 700호  
(일부개정) 1984.01.24 조례 제 755호  
(일부개정) 1984.02.20 조례 제 779호  
(일부개정) 1997.01.13 조례 제1433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6. 29 조례 제596호)(개정 2008. 1. 14)

###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 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 개량사업은 주택의 개축, 이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 제2호의 국민주택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 제 3조 (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 4조 (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또는 한국주택은행 거창군지점에 설치한다.

## 제 2 장 농촌주택사업

### 제 5조 (세입)

농촌주택 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제 6조 (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용자금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 7조 (자금운영)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용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촌 주택사업 용자금채권 관리 대장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촌주택 사업의 용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

#### 제 8조 (자금의 신청)

자금의 용자 또는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자) 보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 9조 (용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주택 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용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용자금의 이율과 용자기관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문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제 1982. 6. 29 조례 제549호)
2. 주택개량사업(자치 단체가 직접 시행한 용자금)

이 율 : 시중은행 일반대출 금리적용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식상환

#### 3. 택지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4.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 주택개량 추가 용자금 (1980. 7. 21 조례 제 498호 신설)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 5. 변소개량 용자금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6. 태양열 이용시설 용자금( 1981. 2 . 28 조례 제 526호 신설)

이 율 : 무이자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④ 제3항의 자금중 할부금 상환이 연체 되었을 경우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료를 균수는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1984. 2. 20 조례 제779호)

### 제 3 장 국민 주택 사업

#### 제 10조 (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 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임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입금 공채소화 수익금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 「주택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개정 2008. 1. 14)
6.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7. 특별회계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조례 제700호 1983. 7. 12 신설)

#### 제 11조 (용자조건)

국민주택자금 용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 3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1. 14)

#### 제 12조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은 용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상환한다.

#### 제 13조 (용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용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자체 자문에 의한 용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4조 (관리비)

국민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은 「주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1. 14)

#### 제 15조 (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균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 16조 (자금의 전용 금지)

농어촌 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조 (준용규정)

-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② 용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제9조제2항의 경우 반환을 명하여도 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1982. 6. 29 조례 제594호)

제 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조례 제231호) 및 국민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248호는 이를 폐지한다.
- ③ (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4호의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 용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5호의 변소개량 용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1981. 7. 10 조례 제542호 개정)

부 칙 (1979. 1. 6 조례 제 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1 조례 제 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7년 11월 1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 1. 30 조례 제481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0. 7. 21 조례 제 498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2. 28 조례 제 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 10 조례 제 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6. 29 조례 제 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7. 12 조례 제 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4 조례 제 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 7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1. 13 조례 제 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거창군 공고 제2016-1061호

# 군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2 - 2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07.

## 거 창 군 수

###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군 계획 시설 (교통 시설)	거창읍 아림사앞 (소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거창	대동	소로	2	2	56.3	7.8 ~ 7.4	587.0	거창읍 대동리 576-10 ~ 거창읍 대동리 577-14	경고 1977-256호 (1977.04.25)	2016.11~ 2017.12.31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 - 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942	587					
1	거창읍 대동리	576-10	답	144	23		거창군			
2	“	576-17	답	209	209		거창군			
3	“	576-16	답	194	194		거창군			
4	“	576-15	답	79	78		거창군			
5	“	576-12	도	176	42		거창군			
6	“	576-21	대	96	30		거창군			
7	“	577-14	도	44	11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 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50132/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이나 전화 (055-940-3592), FAX(055-940-3579), E-mail : cloverc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거창군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 현재 주택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

4. 입법예고기간 : 2016. 12. 07. ~ 2016. 12. 28.

5.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 붙임

##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602, Fax055-940-357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055-940-360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1980.04.01 규칙 제 255호

(일부개정) 1983.07.12 규칙 제 346호

(일부개정) 1984.01.24 규칙 제 375호

(일부개정) 1989.08.21 규칙 제 538호

(일부개정) 2008.01.14 규칙 제1012호

##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 2조 (채권관리관의 임무)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접수
2. 농어촌주택사업자금 채권관리상황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채권관리관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 3조 (채권관리부 비치)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 사업 융자금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하며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 문서로 한다.

## 제 4조 (융자 및 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주택 사업의 융자 및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3인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5조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의 관리)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장은 영구 보존 문서로 한다. (신설 1983. 7. 12. 규칙 제346호)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3. 7. 12 규칙 제 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4. 1. 24 규칙 제 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9. 8. 21 규칙 제 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규칙 제1012호 거창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	--------

제출연월일	2016. 11. .
제 출 자	도시건축과장

## 1. 폐지이유

- 가.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 나. 현재는 주택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주택사업업무가 전무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84조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 그 외 특정부서 의견 없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6. 11.
  - (나) 예고결과 : 2016. 12.
- (3) 본문 : 붙임과 같음

#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조례안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 「주택법」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끝.